

# 다국적 기업의 정보공개와 조세회피 관계

신 영 효\*

---

|| 목 차 ||

---

I. 서론	379	IV. 실증분석	392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381	1. 기술통계	
1. 선행연구		2. 상관관계	
2. 연구배경 및 연구가설		3. 실증분석 결과	
III. 연구모형 및 자료 선정	388	V. 결론	403
1. 연구모형			
2. 변수 측정			
3.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대우교수

\*\* 투고일 : 2020. 6. 22. 1차수정일 : 2020. 7. 24. 게재확정일 : 2020. 8. 12.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BEPS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통합보고서 제출의무로 인해 발생한 정보공개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기업 여부와 제도 도입 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OSPI와 KOSDAQ 상장 기업 중 다국적기업 6,556개(기업 × 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제도 도입 후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2017년 이후 대체로 조세회피 성향이 통제집단에 비해 낮아졌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통합보고서 제출로 인한 정보공개 수준 증가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통합보고서 제출 여부가 조세회피 성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다각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노력으로 BEPS 프로젝트 중 Action13 도입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과세관청과 기업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기업의 정보 제출 의무가 실제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BEPS프로젝트, Action13, 통합보고서

## I. 서 론

기업과 외부정보 이용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은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과세관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기업들의 조세회피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조세제도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OECD나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BEPS 프로젝트의 권고안이 국가별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했으며, 이 중 Action13의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인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국내세법에 도입”되었고, 이에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처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의 사적 정보 공개에 주목했다.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과세관청에 공개해야 하므로 이전과 다른 정보공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 관점에서는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많거나 품질이 좋을수록 조세회피의 적발위험은 높아진다. BEPS 프로젝트에 따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은 적용 기업에 있어서는 사적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조세회피의 적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사적 정보 취득을 통한 조세회피 적발, 세무조사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유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

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다국적기업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과세관청에 공개하는 것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적발위험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다국적기업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과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으로 구분하여 제도 도입 후의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제도 도입 후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연구가설과 일치하여 통합보고서 제출이 조세회피 성향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각 나눠 유효세율의 평균값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7년에는 통제집단의 유효세율 평균값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는 기업의 적발위험을 높이므로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BEPS프로젝트는 2012년 6월부터 추진되었으며, Action13의 적용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정책효과가 여러 해에 걸쳐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분석대상을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과 제출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유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제출의무 기업의 평균 유효세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분석 연도 전반에 걸쳐 정책도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세금신고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고도의 조세전략을 구사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국가 간 조세제도나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절감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다각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노력으로 BEPS 프로젝트 중 Action13 도입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 의의가 있다. 기업의 정보공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선행연구에 추가하여 과세관청과 기업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기업의 정보 요구 의무가 실제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3장에서 연구모형 및 자료를 설명한다. 4장에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제시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 1. 선행연구

기업의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중 기업의 정보공개 정도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과세관청의 적발위험이 증가하여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과세관청은 기업의 외부정보 이용자 입장에 있으므로 정보비대칭에 따라 적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조세회피를 적발해야 하는 과세관청은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계획하며 조세회피 확률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사적 정보 취득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적발위험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고, 재무공시,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최기호 2018).<sup>1)</sup>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화와 경영환경 변화로 다국적기업이 증가하

1) 최기호,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8, 207~275면.

고 있으며, 이들의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가 국가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정보 공개에 따른 적발위험과 조세회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 가. 적발위험과 조세회피

최기호(2018)<sup>2)</sup>는 적발위험<sup>3)</sup>은 과세관청과 기업 사이의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한정된 자원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회피 기업을 적발해야 하는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세회피 확률이 높을수록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고, 여러 방법을 통해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기업에 대한 사적 정보 획득 노력은 기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정보로부터의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Hoopes et al.(2012)<sup>4)</sup>은 세무조사의 확률이 증가하면 기업의 유효세율이 평균 2% 정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Towery(2017)<sup>5)</sup>는 미국 국세청이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UTP(Uncertain Tax Position)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강제적인 정보제공이 조세회피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UTP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적용 이전과 이후의 유효

2) 최기호, 앞의 논문, 207~275면.

3) 적발위험이란 기업의 조세회피가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될 확률이 다(최기호, 위의 논문, 228면).

4) Hoopes, J., D. Mescall and J. Pittman, Do IRS Audits Deter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7(5), 2012, pp.1603~1639.

5) Towery, E., Unintended Consequences of Linking Tax Return Disclosures to Financial Reporting for Income Taxes : Evidence from Schedule UTP, *The Accounting Review* 92(5), 2017, pp.201~226.

세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로 유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거나 기업들이 정보공개에도 조세회피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자신이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정보와 조세회피 관련 연구로는 Hope, Ma and Thomas(2013)<sup>6)</sup>가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이익 공시를 강제공시에서 자발적 공시로 변경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공시를 중단한 기업이 공시를 유지한 기업에 비해 유효세율이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국가별 이익 공시는 조세회피 정보를 과세관청에 전달 할 수 있으므로 공시를 중단하여 조세회피 활동을 숨긴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재무정보의 공시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데, 과세관청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Bozanic, Hoopes, Thornock and Williams(2017)<sup>7)</sup>는 미국 국제청이 정보수집을 통해 재무공시가 조세회피의 적발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즉, 재무공시의 강화는 조세회피의 적발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세회피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현욱(2017)<sup>8)</sup>은 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 부담액의 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공시가 이익조정 수준을 높이고, 법인세 부담 수준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 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 부담액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6) Hope, O., M. Ma and W. Thomas, Tax Avoidance and Geographic Earnings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6, 2013, pp.170~189.

7) Bozanic, Z., J. Hoopes, J. Thornock and B. Williams, IRS Atten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5(1), 2017, pp.79~114.

8) 정현욱, “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 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8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17, 129~149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BEPS 프로젝트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실증연구의 분석 결과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대체로 선행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이 회계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는데 전홍민(2013)<sup>9)</sup>은 기업의 국제다각화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국제다각화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며 국가별로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거나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재무이익에 중점을 둔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국제다각화에 대한 측정치를 기존보다 다양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시도와 함께 국제다각화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신영호·정규언(2018)<sup>10)</sup>은 다국적기업의 국제다각화 정도를 해외 종속기업 수나 해외 매출비중으로 측정하였는데, 해외 종속기업 수가 많거나 해외 매출비중이 클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일수록 국가 간 조세제도 차이를 활용하여 조세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유인도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조세회피 전략에 다국적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다.

수출의 비중이 큰 국내 경제 및 기업의 특성상 다국적기업이 많이 존재하며, 과세관청도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며, OECD와 G20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BEPS프로젝트 권고에 대한 이행으로 다국적기업을 대

9) 전홍민, “개별기업의 국제다각화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 저널』 제14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3, 175~197면.

10) 신영호·정규언, “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해외영업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 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18, 137~169면.

상으로 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2. 연구배경 및 연구가설

과세관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적발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기업의 사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기업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이 중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이 있었으며, 국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OECD는 2012년 6월 BEPS<sup>11)</sup>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OECD&G20은 2015년 BEPS 프로젝트의 15개 권고안에 합의했다. 이 중 Action13의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자료인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국내세법에 도입”되었고, 이에 20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처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로 구분되며,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BEPS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마스터파일은 사업활동, 이전가격정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고, 로컬파일은 마스터파일의 정보를 보완하며, 중요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원칙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

11) BEPS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으로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조세조약이나 세법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소득을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조세전략을 의미한다.

국적기업 내 모든 법인의 소득분배, 납부세액 등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BEPS 위험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sup>12)</sup>

국내에서는 BEPS 프로젝트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통합기업보고서에는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기업보고서는 조직구조 및 사업내용과 함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과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 정보, 재무 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에는 국가별 수익 내역, 세전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주요 사업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경우 통합·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 법인이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국가별 보고서는 최종모회사가 제출한다.

<표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통합 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등 포함
개별 기업보고서	개별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출 정보, 재무 현황 등 포함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주)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info/info\\_08\\_02\\_02.asp](https://www.nts.go.kr/info/info_08_02_02.asp)(검색일 : 2020. 6. 8)]

다국적기업은 국가 간 조세제도 차이를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조세를 회피할 유인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다국적기업은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를 활용한 조세 회피가 있었으며, BEPS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적 공동대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과세관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세무조사 등을 통한 조세회피 기업

12) 이동규 외 2인,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OECD/G20 BEPS Project Action13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 15~16면.

의 적발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세관청과 기업 사이의 정보 불균형은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을 찾기 위한 정보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기업 정보 획득에 대한 노력은 기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정보로부터의 취득 등이 있다.

기업 관점에서는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많거나 품질이 좋을수록 조세회피의 적발위험은 높아진다. BEPS 프로젝트에 따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은 적용 기업에 있어서는 사적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조세회피의 적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사적 정보 취득을 통한 조세회피 적발, 세무조사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유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다국적기업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과세관청에 공개하는 것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적발위험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다국적기업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조세회피가 적발되면 추정세액, 기업평판 등 기업 입장에서 발생하는 패널티가 크므로 보고서 제출을 통해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적발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기업은 기존에 비해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설계 및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은 조세회피 성향을 낮출 것이다.

[가설 1-1] 다국적기업 중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성향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 다국적기업 중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성향이 낮을 것이다.

### Ⅲ. 연구모형 및 자료 선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한다. 종속변수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효세율, *BTD*를 각각 활용한다. 유효세율은 전통적 방식에 따른 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한다. 또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인 *BTD*, Desai & Dharmapala(2006)<sup>13)</sup>가 제안한 방법인 *BTD*와 총 발생액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값(이하 '*DD-BTD*')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활용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한다.

관심변수는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여부와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제도가 최초 적용된 2016년 과세연도 이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한다. 이에 통합보고서 제출 여부 [ $Re-N(C)$ ]와 정책 시행 이후의 변수( $Year$ )를 곱한 상호작용변수를 설정하며, 연구가설은  $\beta_3$  값으로 검증된다.

13) Desai, M. and D.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2006, pp.145~179.

$$TA_{i,t} = \beta_0 + \beta_1 Re\_N(C) + \beta_2 Year_{i,t} + \beta_3 Re\_N(C) \times Year_{i,t} + \beta_4 SIZE_{i,t} + \beta_5 IVS_{i,t} + \beta_6 CFO_{i,t} + \beta_7 OC_{i,t} + \beta_8 FOR_{i,t} + ID + \epsilon_{i,t}$$

*GAAPETR*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CashETR* 법인세납부액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TA*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 추정과세소득\*) / 기초총자산  
*BTD* \* 추정과세소득 =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자산증감 - 이연법인세 부채증감) / 법정법인세율

*DD-BTD* Desai & Dharmapala(2006)가 제시한 조세회피 측정치

*Re-N*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 = 1, 그렇지 않은 기업 = 0

*Re-C* 통합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기업 = 1, 그렇지 않은 기업 = 0

*Year* 정책 시작연도인 2016년 이후 = 1, 2016년 이전 = 0

*Re-N(C) × Year* 통합보고서 제출기업 여부 × *Year*(정책 시행 이후)

*ROA*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LEV* 부채비율(기초총부채 / 기초총자산)

*SIZE* 기업규모[ln(기초총자산)]

*IVS* 투자규모(유형자산 / 기초총자산)

*CFO*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 / 기초총자산)

*OC* 대주주지분율(최대주주 등 보통주식비율 / 100)

*FOR* 외국인지분율(외국인 주식분포비율 / 100)

*ID*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에 따른 산업별 고정효과(더미변수)

## 2. 변수 측정

### 가. 종속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GAAP ETR*, *Cash ETR*, *BTD*, *DD-BTD*를 활용한다. *GAAP ETR*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눠서 산출했으며, *Cash ETR*은 법인세납부액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눠서 측정했다.

*BTD*는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현재 과세소득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은 법인세비용에 현금흐름표상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계산하고 법정법인세율로 나누어 추정했다. 다만, *BTD*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모두 조세회피로 간주하는데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차이 중 일부는 회계기준과 세법규정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과세소득 추정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방법으로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Desai & Dharmapala(2006)<sup>14)</sup>가 활용한 조세회피 측정방법도 적용하여 분석한다. *DD-BTD*는 종속변수에 *BTD*, 독립변수에 총 발생액으로 모형을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값을 조세회피로 보는 측정방법이다.

#### 나. 관심변수 측정

현재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아래 <표 2>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개별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한 기업이다. 국가별 보고서는 최종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뉘서 제출의무자를 판단하며,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이 제출의무자가 된다.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의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 기업 정보가 없으므로 공통 적용 기준인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

14) Desai, M. and D. Dharmapala, *op. cit.*, pp.145~179.

으로 개별법인의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통합·개별 기업보고서는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비교하였고, 국가별 보고서는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출의무자를 구분하였다.

<표 2>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 해당 과세연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 해당 과세연도 500억 원 초과
국가별 보고서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 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info/info\\_08\\_02\\_02.asp](https://www.nts.go.kr/info/info_08_02_02.asp)(검색일 : 2020. 6. 8)]

### 3.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본 연구는 BEPS프로젝트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TS-2000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KOSPI 및 KOSDAQ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금융업종에 속하거나 결산일이 12월이 아닌 기업, 다국적기업이 아닌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미리 제외하였다. 다국적기업 여부는 해외에 종속회사가 하나 이상인 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선정했

다. 표본 대상 중 재무자료가 일부 없는 표본, 당기순이익이 음(-)인 기업, 그리고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의 상·하위 1%의 이상치를 제거하여 최종 표본 6,556개(기업 × 연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표 3> 표본 선정 절차

항 목	표 본 수
표본 추출기간(2012년~2019년)	10,084
분석대상 중 재무자료가 일부 없는 표본	(63)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표본	(3,070)
종속변수 이상치(outlier) 제거	(395)
최종 표본의 수	6,556

## IV. 실증분석

### 1. 기술통계

분석에 활용한 기업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6>에 제시한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유효세율인 *GAAP ETR*의 평균은 21.78%, *Cash ETR* 평균은 21.99%로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최솟값과 최댓값도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조세회피 측정치인 *BTD*는 평균은 0.007이었고, *DD-BTD*의 평균은 -0.03으로 나타났다. 관심변수 중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기업 여부 평균은 0.5569로 제출 의무 기업이 많이 분포했으며,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 여부 평균은 0.1763으로 제출 의무 기업이 17.63%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기업규모, 투자규모, 영업현금흐름,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을 설정하였다. 이 중 영업현금흐름만 최솟값이 음(-)의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기타 변수는 모든 기술통계량이 양의 값으로 도출되었다.

<표 4> 기술통계량

구 분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수
<i>GAAPETR</i>	-1.2087	0.2232	0.9663	0.2178	0.1889	6,556
<i>CashETR</i>	-1.2151	0.2242	1.1218	0.2199	0.1972	
<i>BTD</i>	-0.1156	0.0001	0.2911	0.0070	0.0425	
<i>DD-BTD</i>	-0.2032	-0.0268	0.1994	-0.0303	0.0451	
<i>Re_N</i>	0	0	1	0.1763	0.3811	
<i>Re_C</i>	0	1	1	0.5569	0.4968	
<i>ROA</i>	0.0001	0.0452	1.0556	0.0591	0.0533	
<i>LEV</i>	0.0112	0.4236	1.5915	0.4208	0.1970	
<i>SIZE</i>	15.8777	19.2650	26.5503	19.5986	1.5414	
<i>I/S</i>	0.0001	0.3281	2.2539	0.3367	0.2042	
<i>CFO</i>	-0.7841	0.0683	1.3270	0.0742	0.0878	
<i>OC</i>	0.0228	0.4170	1.8442	0.4271	0.1685	
<i>FOR</i>	0.0000	0.0407	0.8973	0.0948	0.1271	

## 2. 상관관계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값은 <표 5>에 제시하며,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관심변수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관계수 값은 크지 않지만 유효세율 과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양(+)<sup>1</sup>의 값을, *BTD*와 *DD-BTD*는 음(-)<sup>2</sup>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연도의 더미변수와 곱한 상호작용변 수와의 상관관계도 유효세율과는 양(+)<sup>3</sup>의 관계, *BTD* 및 *DD-BTD*와는 음 (-)<sup>4</sup>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세율은 값이 클수록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세 금 납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반대 로 *BTD*와 *DD-BTD*는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값이 작을

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상관관계 결과 값은 연구가설과 같이 통합보고서 제출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업규모와 통합보고서 제출기업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0.736, 0.477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과 기업규모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통제변수와 종속 및 관심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Variable	GAAP ETR	Cash ETR	BTD	DD- BTD	Re-N	Re-C	Re-N x Year	Re-C x Year	ROA	LEV	SIZE	IVS	CFO	OC
Cash ETR	0.933 ***													
BTD	-0.668 ***	-0.702 ***												
DD- BTD	-0.507 ***	-0.542 ***	0.682 ***											
Re_N	0.145 ***	0.136 ***	-0.118 ***	-0.028 **										
Re_C	0.168 ***	0.155 ***	-0.176 ***	-0.104 ***	0.261 ***									
Re_N x Year	0.118 ***	0.111 ***	-0.091 ***	-0.013 ***	0.687 ***	0.179 ***								
Re_C x Year	0.119 ***	0.119 ***	-0.123 ***	-0.066 ***	0.130 ***	0.591 ***	0.367 ***							
ROA	-0.165 ***	-0.161 ***	0.340 ***	-0.386 ***	-0.101 ***	-0.083 ***	-0.089 ***	-0.056 ***	-0.265 ***					
LEV	0.075 ***	0.070 ***	-0.053 ***	0.159 ***	0.234 ***	0.247 ***	0.153 ***	0.111 ***						
SIZE	0.236 ***	0.218 ***	-0.211 ***	-0.057 ***	0.736 ***	0.477 ***	0.535 ***	0.316 ***	-0.172 ***	0.297 ***				
IVS	0.010 ***	0.012 ***	-0.019 ***	0.047 ***	0.086 ***	0.130 ***	0.050 ***	0.066 ***	-0.066 ***	0.210 ***	0.155 ***			
CFO	-0.018 ***	-0.023 *	0.088 ***	-0.269 ***	-0.004 ***	0.011 ***	-0.014 ***	-0.011 ***	0.460 ***	-0.152 ***	-0.034 ***	0.124 ***		
OC	0.093 ***	0.085 ***	-0.094 ***	-0.056 ***	0.093 ***	0.073 ***	0.080 ***	0.050 ***	-0.034 ***	-0.035 ***	0.109 ***	0.090 ***	0.000 ***	
FOR	0.108 ***	0.102 ***	-0.109 ***	-0.218 ***	0.369 ***	0.258 ***	0.264 ***	0.188 ***	0.146 ***	-0.070 ***	0.486 ***	-0.011 ***	0.173 ***	-0.112 ***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 3. 실증분석 결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회피를 할 경우 적발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7년도부터 제도를 시행(2016년도 과세연도 분부터)하고 있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은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에게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적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적발위험이 높아지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제출 의무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을 실험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구분하여 실험집단의 정책 시행 이후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1-1]에서는 다국적기업 중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의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검증한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한다. 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 $Re\_N \times Year$ )의 계수 값은 유효세율은 양(+)<sup>15)</sup>의 값,  $BTD$ 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실험집단으로 설정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BTD$ 와  $DD-BTD$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sup>15)</sup>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보고서 제출 시행 이후의 조세회피 성향의 경우 방향성은 동일하나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해외 종속기업 등 다양한 조세전략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외매출액이나 종속기업이 많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신영효·정규언 2018).<sup>15)</sup>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은 매출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

15) 신영효·정규언, 앞의 논문, 137~169면.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성향이 더욱 높을 수 있고 <표 6>의 실증 분석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것도 일반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특징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실증분석 결과 :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ax avoidance			
	<i>GAAPETR</i>	<i>CashETR</i>	<i>BTD</i>	<i>DD-BTD</i>
<i>Intercept</i>	-0.339*** (-7.245)	-0.287*** (-5.835)	0.071*** (7.076)	0.0994*** (9.4945)
<i>Re_N</i>	-0.042*** (-3.965)	-0.036*** (-3.207)	0.009*** (3.802)	0.008*** (3.414)
<i>Year</i>	-0.007 (-1.315)	-0.002 (-0.458)	0.002 (1.426)	0.002** (2.140)
<i>Re_N × Year</i>	0.014 (1.225)	0.011 (0.906)	-0.000 (-0.107)	0.001 (0.331)
<i>ROA</i>	-0.590*** (-11.918)	-0.604*** (-11.620)	0.304*** (28.631)	-0.289*** (-26.173)
<i>LEV</i>	-0.005 (-0.350)	-0.005 (-0.381)	0.013*** (4.596)	0.014*** (4.690)
<i>SIZE</i>	0.030*** (11.857)	0.027*** (10.315)	-0.004*** (-8.003)	-0.004*** (-7.812)
<i>IVS</i>	-0.040*** (-3.316)	-0.034*** (-2.694)	0.005* (1.869)	0.005* (1.819)
<i>CFO</i>	0.147*** (4.964)	0.136*** (4.355)	-0.035*** (-5.462)	-0.046*** (-6.904)
<i>OC</i>	0.083*** (5.991)	0.079*** (5.417)	-0.020*** (-6.707)	-0.018*** (-5.952)
<i>FOR</i>	0.054** (2.460)	0.062*** (2.668)	-0.036*** (-7.552)	-0.037*** (-7.472)
<i>Adj.R<sup>2</sup></i>	0.0840	0.0730	0.1666	0.1992
<i>N</i>	6,556			

주1) 표 안의 숫자는 Coefficient, 괄호 안은 t-value를 나타냄(이하 같음).

주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이하 같음).

[연구가설 1-2]에서는 다국적기업 중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업의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검증한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한다. 주요 관심변수인 보고서 제도 시행 후 제출의무 기업( $Re\_C \times Year$ )의 유효세율과의 관계는 *GAAP ETR*은 5% 수준, *Cash ETR*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sup>1)</sup>의 값으로 나타나 조세회피 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인 *BTD*는 5% 수준, *DD-BTD*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sup>2)</sup>의 값으로 나타나 동일하게 제도 시행 후 조세회피 성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성향은 유효세율이 *GAAP ETR*은 5% 수준, *Cash ETR*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sup>3)</sup>의 값을, *BTD*와 *DD-BTD*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sup>4)</sup>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분석과 달리 통합·개별기업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성향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실증분석 결과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여부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ax avoidance			
	<i>GAAPETR</i>	<i>CashETR</i>	<i>BTD</i>	<i>DD-BTD</i>
<i>Intercept</i>	-0.1528*** (-3.9563)	-0.1155*** (-2.8488)	0.0183** (2.2133)	0.0468*** (5.435)
<i>Re_C</i>	0.016** (2.229)	0.013* (1.701)	-0.007*** (-4.473)	-0.008*** (-4.585)
<i>Year</i>	-0.013* (-1.888)	-0.012* (-1.720)	0.003** (2.296)	0.004** (2.543)
<i>Re_C × Year</i>	0.020** (2.239)	0.025*** (2.659)	-0.005** (-2.359)	-0.004* (-1.774)
<i>ROA</i>	-0.596*** (-12.063)	-0.609*** (-11.727)	0.306*** (28.894)	-0.288*** (-26.150)
<i>LEV</i>	-0.015 (-1.172)	-0.016 (-1.141)	0.016*** (5.853)	0.017*** (5.884)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ax avoidance			
	<i>GAAPETR</i>	<i>CashETR</i>	<i>BTD</i>	<i>DD-BTD</i>
<i>SIZE</i>	0.019*** (9.369)	0.018*** (8.169)	-0.001*** (-3.109)	-0.001*** (-3.142)
<i>IVS</i>	-0.038*** (-3.156)	-0.032** (-2.560)	0.004 (1.637)	0.004 (1.583)
<i>CFO</i>	0.140*** (4.728)	0.129*** (4.142)	-0.033*** (-5.127)	-0.044*** (-6.586)
<i>OC</i>	0.078*** (5.626)	0.074*** (5.087)	-0.018*** (-6.163)	-0.017*** (-5.417)
<i>FOR</i>	0.045** (2.052)	0.053** (2.294)	-0.033*** (-6.977)	-0.034*** (-6.961)
<i>Adj. R<sup>2</sup></i>	0.0859	0.0756	0.1734	0.2048
<i>N</i>	6,556			

통합보고서 제출 적용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제출의무 기업 여부에 따른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일부 검증하였다. 다만, 연도별로 적용 기업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연도별 적용 기업이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조세회피 경향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자 동일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각각 실증분석을 실시했으며, 주요 관심변수[ $Re\_N(C) \times Year(2016 \sim 2019)$ ]의 결과 값만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연도별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는 앞선 <표 6>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유효세율로 측정된 결과에서만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9>는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연도별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 방향은 연구가설과 일치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제도 적용 첫 해인 2016년에는 *DD-BTD*를 제외한 다른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값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제도 도입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의 경우 유효세율과 *BTD*와 *DD-BTD*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이 검증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8> 실증분석 결과 :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연도별)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ax avoidance			
	<i>GAAPETR</i>	<i>CashETR</i>	<i>BTD</i>	<i>DD-BTD</i>
2016	0.008 (0.501)	0.002 (0.113)	0.003 (0.793)	0.001 (0.158)
2017	0.021 (1.223)	0.021 (1.162)	-0.002 (-0.417)	0.001 (0.199)
2018	0.015 (0.880)	0.010 (0.588)	-0.003 (-0.765)	-0.000 (-0.097)
2019	0.012 (0.731)	0.010 (0.561)	0.001 (0.350)	0.003 (0.680)

<표 9> 실증분석 결과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여부(연도별)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Tax avoidance			
	<i>GAAPETR</i>	<i>CashETR</i>	<i>BTD</i>	<i>DD-BTD</i>
2016	0.012 (0.872)	0.017 (1.177)	-0.005 (-1.548)	-0.005* (-1.722)
2017	0.046*** (3.277)	0.052*** (3.478)	-0.004 (-1.299)	-0.004 (-1.186)
2018	0.035*** (2.595)	0.039*** (2.748)	-0.009*** (-3.086)	-0.008** (-2.534)
2019	0.020 (1.443)	0.023 (1.616)	-0.010*** (-3.595)	-0.008*** (-2.724)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기업 중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에 비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동일 적용 기업(국가별 보고서도 제출 의무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매출규모나 기업규모가 작고 해외 종속회사의 수나 규모 등 국제다각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에 큰 차이가 없거나 제출의무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성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2012년부터 OECD 등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움직임이 있었고, 거대 다국적기업은 이를 미리 대비하여 정보공개에도 조세회피 정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Towery, 2017).<sup>16)</sup>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상대적으로 대비가 늦거나 이에 대한 여력이 없음에 따라 제도 시행과 적용 여부가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통계분석 결과 값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전보다 이후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기간 동안 유효세율의 평균값 추세를 살펴본다.

<그림 1>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유효세율 평균값 추세를 나타낸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은 유효세율 평균값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 2016년 두 집단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2017년 차이가 가장 커졌으며, 이후 다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림 2>는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유효세율 평균값 추세를 나타내는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2016년 다소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7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실험집단의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집단인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기업들의 평균 유효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적용 세율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미제출기업의 유효세율 평균이 실험집단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나지만 2017년의 경우 그 격차가 10%p에 달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는데 BEPS 프로젝트 관점에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6년도 과세연도분에 대해 정책이 시행되었고,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이를 오히려 활용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해외매출액, 이익 등의 연도별 추세는 큰 차이가

16) Towery, E., *op. cit.*, pp.201~226.

없는데 이 시기 통제집단의 이익증가 대비 법인세비용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유효세율 감소는 이월결손금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제도 활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책도입 효과 측면에서는 정책 적용 여부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행태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중차분법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 정책 시행에 따라 도입 전과 후의 실험집단의 추세가 달라지며, 그 변화 정도를 통해 이분차분법 추정량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연도별·집단별 유효세율 평균값 추세는 2017년 비교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나 그 원인이 실험집단의 변화가 아닌 비교집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표 7>을 통해 [연구가설 1-2]를 일부 검증할 수 있었으나 이는 정책 도입 효과보다는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평균유효세율 감소에 따른 결과일수도 있기에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1> 국가별 보고서 제출 여부별 유효세율 평균 추세



<그림 2>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여부별 유효세율 평균 추세



## V. 결 론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의 사적 정보 공개에 주목하여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과세관청에 공개해야 하므로 이러한 정보공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과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으로 구분하여 제도 도입 후의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차분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제도 도입 후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연구가설과 일치하여 통합보고서 제출이 조세회피 성향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 분석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각 나눠 유효세율의 평균값 추세를 살펴봤는데 2017년에는 통제집단의 유효세율 평균값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변화가 아닌 통제집단의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통합보고서 제출로 인한 정보공개 수준 증가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연도별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개별기업 보고서 제출 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조세회피 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제도 도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기업의 적발위험을 높이므로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 BEPS프로젝트는 2012년 6월부터 추진되었으며, Action13의 적용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

로 논의되었기에 정책효과가 여러 해에 걸쳐서 적용됨에 따라 정책 시행 전·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정책도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국적기업이 세금신고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고도의 조세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국가 간 조세제도나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절감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다각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노력으로 BEPS 프로젝트 중 Action13 도입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과세관청과 기업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기업의 정보요구 의무가 실제 조세회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통합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을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른 제출 의무 대상 기업의 정확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신영효 · 정규연, “법인세율 차이가 기업의 해외영업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 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18.
- 이동규 · 전성민 · 홍민옥,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OECD/G20 BEPS Project Action13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
- 전홍민, “개별기업의 국제다각화가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 저널』 제14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3.
- 정현욱, “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 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저널』 제18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2017.
- 최기호,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8.

### 2. 국외 문헌

- Bozanic, Z., J. Hoopes, J. Thornock and B. Williams, IRS Atten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5(1), 2017.
- Desai, M. and D.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2006.
- Hope, O., M. Ma and W. Thomas, Tax Avoidance and Geographic Earnings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6, 2013.
- Hoopes, J., D. Mescall and J. Pittman, Do IRS Audits Deter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7(5), 2012.
- Towery, E., Unintended Consequences of Linking Tax Return Disclosures to Financial Reporting for Income Taxes : Evidence from Schedule UTP, *The Accounting Review* 92(5), 2017.

<Abstract>

**Information Disclosure and Tax Avoidance Relation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Shin, Young Hyo\*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rising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an integrated report introduced according to the BEPS project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the company.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 effect after introducing the system of a company to submit an integrated report, it is verified b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From 2012 to 2019, 6,556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mpany × year) among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for companies obligated to submit national reports, the policy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integrated/individual company reports showed a tendency to lower tax avoid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year, the policy effect was not verified for the compulsory companies for submitting national reports. Companies that have been required to submit integrated and individual company reports have generally had a taxes avoidance tendency to lower compared to control groups since 2017. For companies that are obliged to submit a country-specific report,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due to the submission of the integrated report has little effect on tax avoidance tendency. However, companies that are obligated to submit integrated/individual company reports can confirm that the submission of integrated reports has had a certain effect on tax avoidance tendency.

This study verified the policy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Action13 among BEPS projec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n effort to prevent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companies due to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the company's obligation to submit information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company on actual tax

---

\* Collegiate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avoidance tendency.

▶ **Key Words** : multinational enterprise, tax avoidance, BEPS project, Action13, country by country reports

